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안중범** · 전승훈*** · 김동준****

본 연구는 개별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개별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도, 그리고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도입은 소득세 부담과 가구주의 한계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한계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하에서 보다 약화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과세기반의 축소로 인해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과세단위 변경 검토시 공제제도 변경 및 세율체계 변경 등을 통한 세수 확대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소득세, 과세단위, 선택적 이분이승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21, H24

I. 서 론

과세단위라 함은 담세력을 파악하는 기본단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과세단위의 설정은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징수하는 소득세, 재산세 및 각종 수익과 관련되는 조세제도의 경우 과세단위의 선택은 경제행위자의 사회·경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본 논문에 대해 논평해 주신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리며, 본 논문의 내용은 저자들이 속한 기관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화: (02) 760-0435, E-mail: cban@skku.edu

*** 교신저자,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전화: (02) 788-4664, E-mail: jsh1105@nabo.go.kr

**** 공동저자,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전화: (02) 958-4103, E-mail: erehwono@kdi.re.kr

논문투고일: 2010. 2. 25 수정일: 2010. 3. 22 게재확정일: 2010. 5. 3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완전 개인단위주의를 적용한 개별과세를 하고 있다.¹⁾ 이는 개별단위과세가 합산단위과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혼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기혼여성의 한계세율을 낮춰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전병목, 2007; 김현숙, 2007a, 2007b). 이와 아울러 국제 비교 결과 개별과세가 세부담 차이를 양산하거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이 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전병목, 2007).

이러한 개별과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민호, 2005; 김완석, 2005; 양충모, 2008 등).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개별과세제도는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경제적 단위가 가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가구의 관심사는 부부 중 누가 어떠한 소득을 얼마만큼 획득했는가보다는 부부가 획득한 소득 총액이다. 따라서 개인단위보다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단위이면서 거래의 주체인 부부 중심의 가계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고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 세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도 개별과세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별과세제도하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재산형성 및 소득형성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기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과세제도는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을 침해하며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존재한다.

셋째,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시행과 정책효과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두 제도의 지원 및 평가단위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가 개별과세제도인데 반해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1) 2002년 이전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년 8월 29일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상 혼인의 보호 차원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됨을 판결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참조).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및 평가단위가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과세단위의 변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과세단위 변경은 가구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가구의 세부담 변화는 세후 소득분배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 가구원이 직면하는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을 변화시켜 노동공급 행위에 영향을 주고, 세수 역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과세단위 유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세단위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법적 부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²⁾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전병목(2008)³⁾ 등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단위 유형을 기준으로 개별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개별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이분이승제, 부

2) 과세단위 개편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김민호(2005)와 김완석(2005) 등이 있다. 김민호(2005)는 조세법적 이념과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과세단위는 가족(세대)단위라고 주장하였으며, 김완석(2005)은 개인단위와 이분이승제 중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전병목 외(2008)의 경우에도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병목 외(2008)는 법적으로 과세제도와 지원제도의 불일치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전병목 외(2008)는 ‘노동시장 참가모형’을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활용, 노동시장 참여유인의 변화를 검토하고 가계조사자료(2007) 원자료를 이용하여 제도변환이 야기하는 소득분포,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고려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인하여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은 소폭 개선됨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낮은 노동공급 탄력성으로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으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장기성장을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중요한 과제라면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고, 만일 제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혼인세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의 낮은 소득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과세단위 변경의 역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과세단위 변경의 문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산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등의 문제는 과세단위 변경보다는 증여추징 등 기존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유리함을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4)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국외 문헌으로는 Groves(1963), Goode(1976), Pechman(1983), Bittker(1975), Boskin(1973), Boskin and Sheshinski(1983), Piggott and Walley(1994), Whittington and Alm(2001), Kaplow(1992), Masui and Nakazato(1999)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최광(1990), 김완석(2005), 전병목(2007), 임봉옥(2008), 김유찬(2008), 전병목 외(2008) 등에는 이들 연구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부합산 비분할제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각 과세단위 유형별로 다음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과세단위 유형별로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한다. 둘째,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과세단위 변화가 가구주 및 배우자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유인효과를 검토한다. 이때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비교를 통해 각각의 과세단위가 특정 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과세단위 유형별로 세후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단위의 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과세단위 유형별로 근로소득세수를 비교한다. 조세의 중요한 역할은 세수확보이다. 따라서 노동공급과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과세단위 유형별로 소득세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과세단위 유형과 주요국의 과세단위를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분석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소득세 계산방법을 소개하고, 제Ⅳ절에서는 과세단위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과세단위 유형 및 주요국의 과세단위

1. 과세단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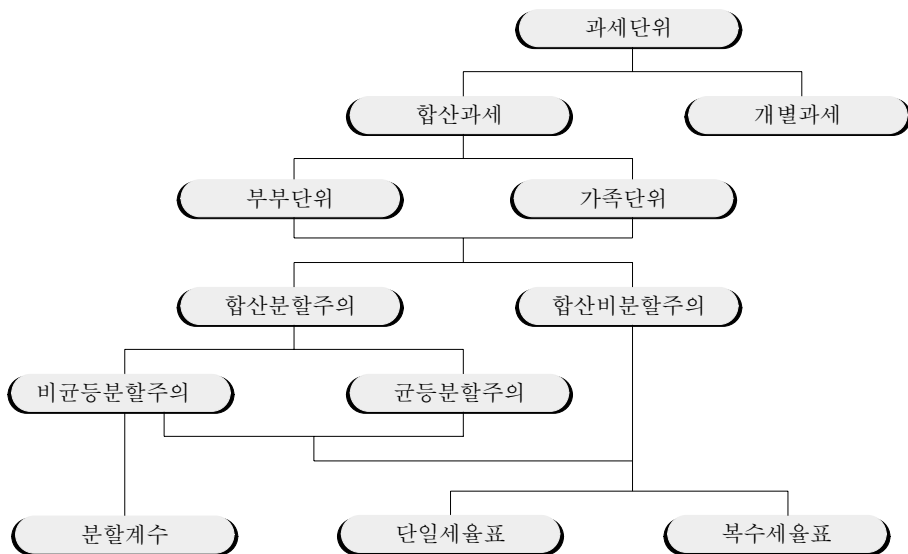
현존하거나 존재하였던 과세단위 유형은 크게 소득을 얻는 개인(가득자)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단위주의에 입각한 개인(또는 개별)과세방법(*independent or separate taxation*)과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득단위나 소비생활상의 집단을 과세단위로 하는 소득(또는 소비)단위주의에 의한 합산과세방법(*joint taxation*)으로 구분된다.

합산과세방법은 합산대상이나 소득의 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합산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한정하여 과세단위를 설정하는 부부단위주의(*marital unit*)와 부모 등을 포함한 모든 동거가족으로 확대하여 과세단위를 설정하는 가족단위주의(*family unit*)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할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설정된 과세단위의 총합산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할방법과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구성원의 수로 분할한 후 각각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합산

분할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합산분할방법은 분할방식에 따라 균등분할주의와 비균등분할주의로 구분된다. 균등분할주의는 해당 단위의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가구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다시 가구원수를 곱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비균등분할주의는 분할계수의 조정을 통해 1차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이외의 소득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별과세방법과 합산균등분할방법의 절충형으로 선택적 이분이승제가 존재한다. 이 경우는 개별과세와 합산과세에 대하여 개별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납세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합산과세방법의 경우 소비단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표(one rate schedule)주의와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표(two or more rate schedules)주의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단일세율표 아래 이분이승제를 시행할 경우, 기혼자 특히 홑벌이 부부에 유리하고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세대주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Bittker, 1975), 1951년 처음으로 독신세대주를 위한 세율표가 제정되고 이를 개선하면서 현재까지 복수세율표를 유지하고 있다.

위의 과세단위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과세단위의 유형

2. 주요국의 과세단위 유형⁵⁾

해외의 과세단위 유형선택은 법적 전통과 가족에 대한 정의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경되어 왔다. 따라서 각국마다 그 선택은 매우 상이한데, 주요 선진국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별과세제도를 선택한 영국과 일본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최초 1799년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자, 1972년 자산소득의 경우 합산과세하되 부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1990년 부부간 평등에 근거하여 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어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887년 소득세법의 제정시에는 가족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가, 1947년 민법상 친족법의 개정으로 가족단위 합산비분할주의는 폐지되고, 1950년 자산소득의 분할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단위과세제도에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합산과세를 병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함을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과세방법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채택한 사례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이 있다. 미국의 소득세제는 1913년 개별과세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재산제도의 경우 앵글로색슨계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개별과세방법과 유럽 민법(civil law)의 전통에 따른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여 상이한 제도가 병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상 충돌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48년 기혼부부는 임의적 선택에 따라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거나 이분이승제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Joint Return System)를 채택한 이후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정하면서 변천하여 왔다. 1951년 가구규모와 혼인 및 혼인유지에 따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신고하는 별도의 세율표를 도입하였으며, 1969년 복수세율표를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4종류로 세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자와 공동 신고하는 기혼부부간 불공평성과 기혼부부의 경우에도 누진세율구조에 의해 결혼혜택(marriage bonus)과 결혼징벌(marriage penalty)이 혼재된 상황이 계속되었

5) 본절의 내용은 김완석(2005)의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조세법이 혼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경우, 어떠한 결혼의 형태와 가족구성하에서도 총소득이 동일하다면 세 부담이 동일해야 하는 ‘조세중립성’의 달성이 근본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개정법률안⁶⁾은 15% 세율구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혼부부의 표준공제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5년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자문단은 결혼징벌을 축소하기 위해 기혼부부에 대하여 세율구간,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 사회보장급여과세의 공제액을 독신자에 비해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⁷⁾한다.

독일은 1920년 연방소득세법의 제정시 가족단위의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정 바로 다음 해인 1921년 부인의 독립적 근로소득 및 남편과 관계가 없는 사업에서의 비독립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독립과세를 하는 부분 개별과세제도로 수정되었다가, 1934년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가족단위 합산비분할과세방법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41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로 여성의 노동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남편과 별개 사업에서 얻는 비독립적 노동에 의한 근로소득의 경우 독립과세하는 부분개인단위과세제도로 수정되었다가, 이러한 제도가 파생시키는 결혼징벌세(Ehestrafsteuer)의 문제와 소득세 부담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분이승제(Splittingverfahren)와 개별과세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후 1964년 자녀합산과세 역시 기본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 선언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과세단위는 이분이승제와 개별과세 중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적 이분이승제가 확립되었다. 세계가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합산과세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① 독일은 종래부터 부부를 일체로 보아 세대를 단위로 하여 담세력을 측정하여 왔고 이러한 세대합산을 계속하는 것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어떠한 결혼의 형태와 소득구성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같아야 한다. ③ 합산과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세대는 매우 유리해진다. 즉, 계약에 따라 부부공유재산제를 선택함으로써 자산소득을 분할하는 것

6)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공동신고하는 기혼부부의 표준공제와 15%가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2005년까지 미혼독신자의 과세구간(bracket)의 167% 수준인 기혼부부의 합산과세시 15% 세율의 과세구간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 200%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7) 2005년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자문단은 종래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standard exemption),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로 통합하고, 가족세액공제와 사회보장급여과세에 있어서 면세점을 독신자의 두 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분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④ 또한 여성평등의 관점에서 남편의 직업에 대한 처의 조력을 세법상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독특한 유형으로 가족계수제를 채택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는 1945년 세대단위 합산분할과세제를 기본으로 세대(foyer)에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른 가족계수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가족계수제(systeme du quotient familial)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상황 및 부양에 따른 일정한 가족계수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세대구성원에게 분할한다.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고 미성년 자녀 및 장애인 자녀는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에 포함 신고하되, 이혼소송중이거나 법률상 별거중 따로 거소를 갖는 것이 허가된 경우 부부가 재산을 분할한다.

이 밖에도 따로 생활하는 경우, 배우자의 일방가출의 경우, 미성년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에서 결혼한 경우는 분리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21세 미만이며 미혼 및 소득이 없을 경우,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군에 복무중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위의 설정은 부부는 2단위, 독신자·이혼자·홀아비·과부는 1단위, 부양자녀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0.5단위 셋째 이하는 2단위로 설정한 후, 세대단위 합산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눈 액수에 세율을 적용한 후,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녀가 많은 기혼자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므로 부담경감한도액을 마련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⁸⁾ 주요국의 과세단위 유형 및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부표 1>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Ⅲ. 분석 시나리오 및 소득세 추정방법

1. 분석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과세유형 시나리오는, ①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한 개별과세, ②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③ 개별과세와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중 선택

8) 이 세제의 경우 인구증가에 공헌하였으나 고소득자에게 큰 경감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표 1〉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구의 소득세 부담
시나리오 1(개별과세)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시나리오 2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산한 후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1/2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2배함
시나리오 3 (선택적 이분이승제)	-가구가 개별과세와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중 소득세 부담이 작은 과세단위 선택
시나리오 4 (부부합산 비분할과세)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산한 후 각종 공제제도 및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가구소득세 부담 계산

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이분이승제, ④ 부부합산 비분할과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을 사용한 이유는 이들 제도가 과세단위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⁹⁾

2. 시나리오별 소득세 부담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2008년 연간자료 중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자료¹⁰⁾를 사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측정하였다. 개별과세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때 가구주의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가구 재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였고,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구 내에 존재하는 가구원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구주가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별공제의 경우 가구주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 항목별 공제 총액과 표준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액수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

9) 본 연구에서는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제도, 복수세율표 사용 시나리오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제도의 경우 부부간 분할계수의 선택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수세율표의 경우 세율표 선택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손쉽게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부부합산 비균등분할, 복수세율표 등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0)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수는 6,924개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6,924가구의 세부담이 측정되었다.

하였으며, 배우자는 표준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부합산 균등분할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였다. 이때 특별공제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등의 합산액과 표준공제액 중 더 많은 것을 적용하였다. 인적공제 중 부녀자 공제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에는 이의 1/2에 소득세율과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구하였다. 이후 여기에 2를 곱하여 가구의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였다.

부부합산과세와 개별과세 간의 선택은 각각의 가구가 합산과세와 개별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더 적게 하는 과세단위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였다.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였으며, 여기에 곧장 소득세율과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계산할 때 2009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 귀속소득분을 기준으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세제하의 근로장려금 역시 소득세수 계산시 포함시켰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추출한 후 점증, 평탄, 점감구간별로 산정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추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1,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기타 사회보장급여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계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생계급여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타사회보장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사회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보조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타사회보장급여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부양자녀가 1인 이하인 가구와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자가소유자는 제외하였다. 현행법하에서는 자가소유자라도 주택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

동향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택보유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다섯째, 전세 거주가구 중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였으며, 자산소득이 (1억 원-전세보증금)의 10%를 초과하는 가구 역시 급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자산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자산소득이 위의 기준 이상이면 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과세단위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1. 가구의 소득세 부담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소득세 부담을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은 가구당 평균 91만 원이며, 유효세율의 평균은 1.46%였다.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소득세 부담은 가구당 평균 84만 원과 72만 원이고, 유효세율의 평균은 1.31%와 1.12%였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비분할의 소득세 부담은 122만 원이고 평균유효세율은 1.92%였다. 즉, 과세 유형별로 소득세 부담과 평균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부부합산 비분할제도에서 세 부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개별과세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소득세 부담과 평균유효세율은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한 경우에 제일 작게 측정되었다.

이처럼 선택적 이분이승제와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도하에서 소득세 부담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합산소득에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한 후 여기에 1/2을 곱하면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세제가 누진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물론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2를 곱하여 최종 소득세 부담이 결정되지만, 이것이 과세표준 감소로 인한 소득세 부담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다.

<표 2>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을 과세단위 유형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과세단위가 가구의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표 3>에서는 분석대상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소득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독신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측정하였다.

〈표 2〉 시나리오별 세부담 측정결과

(단위: 만 원, 가구, %)

구 분	부부소득	소득세 부담	평균유효세율	개별과세 대비	
				세 부 담	유효세율
개별과세	3,342	91	1.46		
부부합산 균등분할		84	1.31	-7.76	-9.85
선택적 이분이승제		72	1.12	-21.55	-23.33
부부합산 비분할		122	1.92	33.33	31.91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경우 어떠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던 간에 소득세 부담이 동일하였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과세(시나리오 2~4)의 소득세 부담이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보다 낮았다. 특히, 〈표 2〉의 추정결과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의 소득세 부담이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보다 높았던 것과는 달리, 홑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의 소득세 부담이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홑벌이 가구에서 개별과세와 부부합산 비분할과세방법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녀자공제의 적용방법에 기인한다. 개별과세에서 홑벌이 가구의 소득자가 남성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부부합산 비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부부 중 한 명이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였다.¹¹⁾

부부합산과세 중에서는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소득세 부담은 동일하였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부부합산 비분할의 소득세 부담이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소득세 부담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

11) 합산과세시 홑벌이 가구에게 부녀자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제도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홑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과세와 개별과세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가정한다면 홑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자가 남성이 아닌 경우에도,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부녀자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과세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모든 가구에게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였다. 단, 합산과세 제도 도입시 모든 부부가구에게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종 공제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3〉 소득분위별 가구특성별 소득세 부담

(단위: 만 원, %)

소득 분위	가구 특성	시나 리오	소득	소득세 부담	유효 세율	소득 분위	가구 특성	시나 리오	소득	소득세 부담	유효 세율		
1분위	독신	1~4	460	-1	-0.15	2분위	독신	1~4	1,110	-5	-0.47		
	홀벌이	1	488	-4	-0.76		홀벌이	1	1,114	-6	-0.47		
		2	488	-4	-0.77			2	1,114	-6	-0.48		
		3	488	-4	-0.77			3	1,114	-6	-0.48		
		4	488	-4	-0.77			4	1,114	-6	-0.48		
	맞벌이	1	603	-5	-0.80		맞벌이	1	1,156	-7	-0.73		
		2	603	-5	-0.82			2	1,156	-8	-0.75		
		3	603	-5	-0.82			3	1,156	-8	-0.76		
		4	603	-5	-0.82			4	1,156	-8	-0.75		
	3분위	독신	1~4	1,593	5		0.28	4분위	독신	1~4	2,093	19	0.89
		홀벌이	1	1,614	-2		-0.15		홀벌이	1	2,111	10	0.46
			2	1,614	-3		-0.19			2	2,111	8	0.40
3			1,614	-3	-0.19	3	2,111			8	0.40		
4			1,614	-3	-0.19	4	2,111			9	0.41		
맞벌이		1	1,588	0	0.00	맞벌이	1		2,123	6	0.29		
		2	1,588	0	-0.01		2		2,123	10	0.45		
		3	1,588	-1	-0.05		3		2,123	5	0.24		
		4	1,588	0	-0.01		4		2,123	10	0.45		
5분위		독신	1~4	2,633	38	1.42	6분위		독신	1~4	3,225	80	2.46
		홀벌이	1	2,637	20	0.77			홀벌이	1	3,209	41	1.27
			2	2,637	16	0.62				2	3,209	28	0.88
	3		2,637	16	0.62	3		3,209		28	0.88		
	4		2,637	19	0.71	4		3,209		38	1.17		
	맞벌이	1	2,645	13	0.48	맞벌이		1	3,235	24	0.74		
		2	2,645	19	0.70			2	3,235	32	0.97		
		3	2,645	11	0.42			3	3,235	20	0.60		
		4	2,645	20	0.77			4	3,235	46	1.42		

〈표 2〉 계 속

소득 분위	가구 특성	시나 리오	소득	소득세 부담	유효 세율	소득 분위	가구 특성	시나 리오	소득	소득세 부담	유효 세율				
7분위	독신	1~4	3,843	141	3.67	8분위	독신	1~4	4,710	196	4.14				
		홀벌이	1	3,871	82			2.10	홀벌이	1	4,710	160	3.38		
			2	3,871	43			1.10		2	4,710	77	1.62		
			3	3,871	43			1.10		3	4,710	77	1.62		
	4		3,871	77	1.98		4	4,710		155	3.26				
	맞벌이	1	3,913	47	1.20		맞벌이	1	4,708	87	1.83				
		2	3,913	51	1.29			2	4,708	85	1.79				
		3	3,913	35	0.89			3	4,708	65	1.38				
		4	3,913	101	2.55			4	4,708	167	3.53				
	9분위	독신	1~4	5,759	324		5.61	10분위	독신	1~4	8,066	651	7.91		
			홀벌이	1	5,810		268			4.58	홀벌이	1	8,648	683	7.29
				2	5,810		168			2.86		2	8,648	484	5.19
3				5,810	168	2.86	3			8,648		484	5.19		
4		5,810		263	4.49	4	8,648		675	7.19					
맞벌이		1	5,823	160	2.73	맞벌이	1		8,861	391	4.10				
		2	5,823	176	2.99		2		8,861	492	5.23				
		3	5,823	136	2.32		3		8,861	361	3.79				
		4	5,823	271	4.63		4		8,861	684	7.24				

났다. 부부합산 비분할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부합산 균등분할의 경우 부부합산 과세표준의 1/2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부부합산 비분할 제도의 경우 부부합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누진적인 소득세 제도하에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하위 30% 집단까지는 합산과세(시나리오 2~4)의 소득세 부담이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보다 작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그보다 높은 집단에서는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시나리오 2)와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시나리오 4)의 소득세 부담이 개별과세의 소득세 부담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반면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한 경우(시나리오 3)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개별과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작게 측정되었다. 개별과세와 부

부합산 균등분할에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차소득원과 2차소득원의 소득편차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납세자가 소득의 편차를 감안한 상태에서 세부담이 작은 과세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가장 낮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가구의 평균소득이 비슷한 5분위를 중심으로 독신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독신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독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개별과세와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높은 데 반해,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더 낮았다. 이는 부부합산 균등분할과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2. 과세단위 변경과 한계유효세율

취업자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근로소득이 상승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 METR) 측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항에서는 가구주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였을 때의 세부담 변화와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였을 때의 세부담 변화를 각각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가구주와 배우자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가구가 직면하는 가구의 한계세율을 측정하였다. 한계유효세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METR = 1 - \frac{\Delta y_{net}}{\Delta y_{gross}}$$

여기서, Δy_{gross} : 총소득의 변화

Δy_{net} : 순소득의 변화

따라서 한계유효세율은 임금수준이 증가시 추가적인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분의 크기를 의미하게 된다. 만일 한계유효세율이 높을 경우 추가적인 소득의 대부분이 조세의 형태로 납부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일 유인이 줄어든다. 반면 한계유효세율이 낮으면

〈표 4〉 가구주 소득 100만 원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단위: %)

구 분	평균한계유효세율
개별과세	5.14
부부합산 균등분할	4.39
선택적 이분이승제	4.24
부부합산 비분할	6.04

추가적인 소득의 배분이 개인의 순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유인이 커지게 된다.

가구주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한계유효세율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별과세에서는 한계유효세율이 5.14%로 측정되었다. 이는 가구주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약 51만 4,000원의 순조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부부합산 균등분할, 선택적 이분이승제, 부부합산 비분할제도의 한계유효세율은 각각 4.39%, 4.24%, 그리고 6.04%로 측정되었다. 앞서 과세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계유효세율 역시 부부합산 비분할이 가장 높고 선택적 이분이승제가 가장 낮았다.

〈표 5〉는 분석대상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소득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독신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 100만 원 증가시 평균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였다. 소득세 부담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독신가구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과세단위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동일하였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높았다.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동일하였고, 부부합산 비균등분할과세의 소득세 부담은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선택적 이분이승제보다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하위 20% 이하인 집단에서는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부부합산 비균등분할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낮았다.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3분위, 5분위, 9분위에서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보다 높았지만, 그 밖의 소득분위에서는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보다 낮았다.

〈표 5〉 소득분위별 가구특성별 가구주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단위: %)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1분위	독신	1	-0.07	2분위	독신	1	1.27		
	홀벌이	1	-0.54		홀벌이	1	1.31		
		2	-0.53			2	1.23		
		3	-0.53			3	1.23		
		4	-0.53			4	1.23		
	맞벌이	1	-0.44		맞벌이	1	0.25		
		2	-0.65			2	0.23		
		3	-0.65			3	0.21		
		4	-0.65			4	0.23		
	3분위	독신	1		2.91	4분위	독신	1	2.57
		홀벌이	1		2.16		홀벌이	1	2.00
			2		2.08			2	1.76
3			2.08	3	1.76				
4			2.09	4	1.87				
맞벌이		1	1.74	맞벌이	1		1.19		
		2	2.00		2		1.82		
		3	1.75		3		1.14		
		4	2.02		4		1.84		
5분위		독신	1	6.08	6분위		독신	1	8.87
		홀벌이	1	3.09			홀벌이	1	5.72
			2	2.30				2	2.44
	3		2.30	3		2.44			
	4		2.92	4		5.40			
	맞벌이	1	1.98	맞벌이		1	3.11		
		2	2.15			2	2.56		
		3	1.86			3	2.41		
		4	3.14			4	6.61		

〈표 5〉 계 속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7분위	독신	1	9.75	8분위	독신	1	10.54		
	홀벌이	1	9.26		홀벌이	1	10.50		
		2	3.14			2	6.13		
		3	3.14			3	6.13		
		4	8.94			4	10.50		
	맞벌이	1	4.86		맞벌이	1	7.74		
		2	3.62			2	7.25		
		3	3.52			3	6.64		
		4	9.51			4	10.38		
	9분위	독신	1		10.86	10분위	독신	1	15.80
		홀벌이	1		10.73		홀벌이	1	15.54
			2		10.08			2	11.24
3			10.08	3	11.24				
4			10.72	4	15.46				
맞벌이		1	9.40	맞벌이	1		11.27		
		2	10.24		2		11.11		
		3	9.33		3		10.74		
		4	10.61		4		15.86		

이상의 결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와 비교할 때 부부합산과세가 홀벌이 가구 및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가구의 노동공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소득수준과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가구의 노동공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과세단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과세제도가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 증가시 평균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였다.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증가시 한계유효세율은 개별과세에서는 0.76%로 측정되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가구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과세의 경우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낮출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결

〈표 6〉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단위: %)

구 분	평균한계유효세율
개별과세	0.76
부부합산 균등분할	3.09
선택적 이분이승제	2.11
부부합산 비분할	4.61

과이다. 이처럼 배우자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배우자 중 미취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에게 100만 원의 추가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평균한계유효세율이 0이 된다. 즉, 대부분의 가구에서 평균한계유효세율이 0이 되기 때문에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개별과세제도하에서 배우자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이 높지 않게 측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다.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낮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었다.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에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4.61%이고,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에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3.09%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합산과세에서 평균한계유효세율이 높게 측정된 것은 배우자의 추가적인 소득이 가구의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2.11%로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나 부부합산 비균등분할과세를 도입한 경우보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분석대상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소득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증가시 평균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였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모든 경우에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낮았다.¹²⁾

12)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홑벌이 가구의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개별과세 제도하에서 배우자의 소득세 부담은 0원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가구의 근로장려금, 가구주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금액 등이 변화하면서 가구의 총조세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190 소득세 관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표 7〉 소득분위별 가구특성별 배우자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단위: %)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소득분위	가구특성	시나리오	평균한계 유효세율
1분위	홀벌이	1	-0.67	2분위	홀벌이	1	0.86
		2	-0.58			2	1.01
		3	-0.63			3	0.92
		4	-0.58			4	1.01
	맞벌이	1	-0.23		맞벌이	1	0.38
		2	-0.83			2	0.13
		3	-0.83			3	0.05
		4	-0.83			4	0.13
3분위	홀벌이	1	1.17	4분위	홀벌이	1	0.08
		2	2.18			2	1.72
		3	1.73			3	1.07
		4	2.19			4	1.82
	맞벌이	1	1.95		맞벌이	1	0.40
		2	1.95			2	1.63
		3	1.61			3	0.42
		4	1.96			4	1.68
5분위	홀벌이	1	0.18	6분위	홀벌이	1	0.33
		2	2.29			2	2.43
		3	1.66			3	2.19
		4	2.76			4	5.38
	맞벌이	1	0.62		맞벌이	1	1.11
		2	1.95			2	2.25
		3	0.57			3	0.76
		4	2.70			4	5.71
7분위	홀벌이	1	0.59	8분위	홀벌이	1	0.72
		2	3.13			2	6.08
		3	3.08			3	6.08
		4	8.92			4	10.50
	맞벌이	1	1.30		맞벌이	1	1.83
		2	2.97			2	6.12
		3	1.35			3	2.81
		4	8.19			4	8.92
9분위	홀벌이	1	0.69	10분위	홀벌이	1	0.85
		2	10.00			2	11.24
		3	10.00			3	11.24
		4	10.72			4	15.45
	맞벌이	1	1.62		맞벌이	1	3.80
		2	8.66			2	9.44
		3	4.23			3	5.12
		4	9.00			4	13.41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5분위, 6분위에서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소득 8분위 이상에서는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4분위와 7분위의 경우에는 개별과세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낮았으나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한계유효세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제도하의 평균한계유효세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가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신규 노동시장 진출과 고소득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추가적인 노동공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반면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추가적인 노동공급 유인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도나 부부합산 비균등분할제도보다는 배우자의 노동공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세단위 변경과 세후 소득분배 상태

형평성은 효율성과 함께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앞서 세부담 및 한계유효세율의 측정은 효율성 측면에서 과세단위 변경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항에서는 형평성을 중심으로 과세단위 변경의 효과를 살펴본다. 조세 및 급여제도의 변화가 분배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 및 급여의 부과 전 소득과 부과 후 소득에 나타나는 불평등 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세전 소득의 지니계수는 0.3649로 측정되었다. 과세단위 유형별로 소득세를 제한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0.3553, 0.3556, 0.3571, 그리고 0.3516으로 측정되었으며, 세전 지니계수 대비 세후 지니계수의 변화로 측정한 소득재분배효과는 각각 2.62%, 2.54%, 2.14%, 그리고 3.64%로 측정되었다. 즉, 부부합산 비분할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고,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낮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어떠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지극히 미약하였다. 이처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수의 공제제도를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부담이 아주

〈표 8〉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구 분	세 전 지니계수	세 후 지니계수	소득재분배효과(%)
개별과세	0.3649	0.3553	2.62
부부합산 균등분할		0.3556	2.54
선택적 이분이승제		0.3571	2.14
부부합산 비분할		0.3516	3.64

작기 때문이다(현진권, 2001).

이처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당수 공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공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없이 과세단위 개편을 검토할 때에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우선 현행 과세제도인 개별과세제도와 비교할 때 과세단위 변경시 평균소득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살펴본 후, 이를 국세통계연보상의 근로소득세 세수에 적용하여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부담을 측정할 때에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세통계연보(2009)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자료에는 근로장려금 관련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측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개별과세제도인 개별과세의 평균소득세 부담액과 비교해 보면,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도를 도입할 경우 평균소득세 부담액은 약 92.4%,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평균소득세 부담은 약 78.8%로 평균소득세 부담액이 감소한 반면 부부합산 비분할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평균소득세 부담액은 개별과세 대비 132.8%로 더 많았다.

〈표 10〉은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 자료이다.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표 9〉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변화

(단위: 만 원, %)

구 분	소득세 부담	현행 제도 대비
개별과세	93	100.0
부부합산 균등분할	86	92.4
선택적 이분이승제	73	78.8
부부합산 비분할	123	132.8

〈표 10〉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단위: 명, 백만 원)

	납세인원	결정세액		납세인원	결정세액
근로소득세 합계	7,959,515	14,182,145	8천만 이하	39,831	540,418
1천만 이하	4,414,450	657,508	8.8천만 이하	20,322	323,713
1.2천만 이하	474,948	230,832	1억 이하	20,192	381,659
3천만 이하	2,068,622	3,420,798	2억 이하	43,759	1,404,850
4천만 이하	434,177	1,854,613	3억 이하	7,516	525,090
4.6천만 이하	159,916	908,323	5억 이하	4,333	494,801
6천만 이하	200,010	1,550,243	10억 이하	2,461	507,138
7천만 이하	68,042	748,318	10억 초과	936	633,8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세는 약 14조 1,821억 원이다.

〈표 11〉은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세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 11〉에서 추정식 1은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합산한 후 여기에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계산한 개별과세제도의 평균소득세 부담액 대비 과세단위 유형별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비중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추정식 2는 가계동향조사에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가구주 및 가구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점에 고려한 추정결과이다. 우선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인 납세자의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에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계산한 개별과세제도의 평균소득세 부담액 대비 과세단위 유형별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비중을 반영하여 과세단위 유형별로 과표 1억 원 미만 집단의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넘는 집단의 총결정세액을 더하였다.

추정결과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약 3조 4,860억 원~4

〈표 11〉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세수 변화 추정결과

(단위: 십억 원)

구 분	추정식 1		추정식 2	
	추정세액	시나리오 1 대비 차액	추정세액	시나리오 1 대비 차액
개별과세	14,182	-	14,182	-
부부합산 균등분할	13,098	-1,084	13,371	-811
선택적 이분이승제	11,171	-3,011	11,928	-2,254
부부합산 비분할	18,839	4,657	17,668	3,486

주: 1) 추정식 1은 2007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산한 후 여기에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계산한 개별과세제도의 평균소득세 부담액 대비 과세단위 유형별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비중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추정식 2는 가계동향조사에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가구주 및 가구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점에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인 납세자의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에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계산한 개별과세제도의 평균소득세 부담액 대비 과세단위 유형별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비중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임.

조 6,570억 원의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약 3조 110억 원~2조 2,540억 원의 근로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과세단위의 변경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도입이 많은 비용을 수반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구주의 추가적인 노동공급과 배우자의 노동공급에도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성장이 촉진되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단위 유형 변경시 세수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함께 단기적인 세수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본 추정결과는 시사한다.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 부부합산 균등분할과세와 개별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도, 그리고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제도 등 4가지 과세단위 유형을 중심으로 과세단위제도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의 변화, 세수의 변화, 한계유효세율의 변화,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개별과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되고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 및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현행 개별과세제도보다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가구주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유효세율 역시 소득수준 및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현행 개별과세제도보다 낮았다. 셋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홀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배우자소득 증가시 한계유효세율은 현행 개별과세제도가 선택적 이분이승제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에서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배우자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유효세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한편,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하에서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행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과세단위를 선택적 이분이승제로 변경할 경우 2조 원 이상의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향후 과세단위 변경을 검토할 경우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의 변경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도를 검토하면서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일세율표제도만을 검토하였다.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른 복수세율표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과세단위 변경에 맞게 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복수세율표의 도입을 통해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대해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독신 가구 등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세수감소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표 1〉 각국의 과세단위 유형과 변화

	도 입	변 천	변천사유	현행제도	특 징
한 국	-1928년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실시	-1948년 개인단위 개별과세로 전환 -1974년 자산소득에 대하여 세대단위 합산비분할주의의 부분도입 -1994년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 비분할과세제도로 변화 -2002년 개인단위 개별과세로 전환	-조세행정의 편의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개인단위 개별과세제도와 소미단위 합산비분할 과세제도 간에 변동과정을 거침	개인단위 과세	-법적 결정에 의해 개인단위 개별과세제도를 선택
	-1887년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1947년 민법상 친족법개정으로 개인 단위 개별과세제도로 전환 -1950년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세대단 위 합산과세제도 도입 -1988년 개인과세개별제도로 전환	-민법상 친족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다가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행정 의 편의에 의해 변동	개인단위 과세	-조세 행정 의 편의에 의해 현행제도 선택
	-1979년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1972년 근로소득의 개별과세 -1990년 완전 개인단위 개별과세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따 라 변동	개인단위 과세	
영 국	-1945년 세대단위 과세제도의 도입(가족계수제)	변천없음		세대단위 과세	-출산율 진작 -가족계수제
프 랑 스	-1920년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921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분 개인 과세 -1941년 개인단위 개별과세제도로 전 환 -1964년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	-여성 노동력 증가와 범상 가족의 경위에 의해 변경	선택적 이분이승제	-법적 결정에 의해 현행제도 선택
독 일					
미 국	-1913년 소득세의 개인단위 개별과세, 재산세제의 경우 주 별로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공 유제 병행	-1930년 소득세제 인정 -1948년 선택적 이분이승제 -1951년 복수세율표 도입 -중위세율구간과 표준공제에 확대	-민법상 부부공동체를 인정하는 주 를 수용하면서 결혼의 징벌을 해결 하는 방향으로 변화	선택적 이분이승제	-복수세율표 도입

비균등 분할계수
선택적 이분이승제

참 고 문 헌

- 김민호,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유찬, “소득세 과세단위의 선택과 관련한 조세정책적 고려와 조세법적인 고려,” 『조세학술논술집』 제24집 제1호, 2008.
- 김현숙,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a.
- _____,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b.
- 양충모, “가족과 혼인제도의 보호와 세대별합산과세제도,” 『한양법학』 제19권 제3집(통권 제24집), 2008. 10.
- 임봉옥, “한국과세제도에 대한 검토,” 『재정정책논집』 제10집 제1호, 2008.
- 전병목,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소고,” 『계간세무사』 2007 여름, 한국세무사회, 2007.
- 전병목·박명호·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전병목·조찬래,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세법연구 06-08,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최 광, “세법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Vol. 6, 한국여성학회, 1990.
-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 Bittker, Boris I.,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Stanford Law Review* 27, 1975.
- Boskin, M.J., “Optimal Tax Treatment of the Family,” Memo 143,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 Growth*, Stanford University, 1973.
- Boskin, M.J. and E. Sheshinsky, “Optimal Tax Treatment of the Family-Married Coup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1983, 281~297.
- Goode, R., *The Individual Income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 Groves, H. M., *Federal Tax Treatment of the Family*,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3.
- Kaplow, Louis, "Optimal Distribution and Taxation of the Family," *NBER Working Paper* No. 4189, NBER, 1992.
- Masui, Y. and M. Nakazato, "Personal Income Taxation," University of Tokyo, mimeo., 1999.
- Pechman, Joseph A., *Federal Tax Policy*, 4th edi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3.
- Piggott and Whalley, "Tax Unit and Household Production," *NBER Working Paper* No. 4820, NBER, 1994.
- Whittington, L. A. and J. Alm, "Tax Reductions, Tax Changes, and the Marriage Penalty," *National Tax Journal* 54, Sep. 3, 2001, 455~472.

[Abstract]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Chong-Bum An* · Seung-Hoon Jeon** · Dong-Joon Kim***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schedul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 in personal income tax unit from the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into the marital unit system based on the aggregation/splitting method. In our analysis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lower the household income tax burden and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METR) of the household head. And It also lower the METR of the spouse in the low and middle dual-income household. Redistribution effect of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is weaker than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but the differences of the redistribution effects among the tax units are very small. In the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according to our results, tax revenue becomes smaller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ase.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s of the current tax-deduction system to expand the tax base whil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Keywords: personal income tax, tax unit,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JEL Classification: H21, H24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Tel: +82-2-760-0435, E-mail: cban@skku.edu

** Corresponding author,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el: +82-2-788-4664, E-mail: jsh1105@nabo.go.kr

*** Coautho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el: +82-2-958-4103, E-mail: erehwno@kdi.re.kr